24. 12. 16. 오후 2:30 인쇄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재외국민2세제도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이란?

외국에서 영주권, 시민권 등을 취득하여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은 국내에서 1년 중 통틀어 6 개월 이상 장기 체재를 할 수 없으나,

국내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재학하는 기간은 국내체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모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교육과정별 모국수학 가능기간

국내 정규학교(고등학교는 제외)는 국내 병역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학교별 제한연령(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의 범위에서 재학하는 경우

구분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4년제	6년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약학과	2년제	법학전문 대학원 등 2년초과 과정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박사
연령	25세	27세	28세	27세	28세	29세	29세	29

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재외국민을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지원하는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장학생 등으로 선발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학위과정인 경우 위 국외이주자의 학교별 제한 연령을 3년이상 초과한 경우

학위과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이 통틀어 2년을 초과한 경우

모국의 언어나 문화 등을 배우기 위해 영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교육기관의 부설 어학당 등에서 통틀어 1년 범위 내에 재학하는 경우

모국수학생 확인 절차

국내 정규 학교(학위과정): 학교에서 입학(편입학)자 명단 통보 (본인 조치 필요없음)

어학당 등 비학위과정: 관할 지방병무청(국외이주담당)에 증빙서류 제출

24. 12. 16. 오후 2:30 인쇄

어떠한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부 또는 모나 배우자와 같이 국내에 체류한 상태에서 재학하는 사람이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 '모국수학'은 국내에서 부 또는 모나 배우자와 같이 체류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